

# IMO 제21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FSI)

##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21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The 21st Session of Sub-committee on Flag state)
- 기간/장소 : '13. 3. 4~3. 8(5일간)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 석 자 : KST 해상안전실 이찬재 차장

## II. 주요 의제 목차

1. [의제 2] 다른 IMO 회의의 결정사항
2. [의제 3] 기국의 협약준수 방안 및 정부의 책임
3. [의제 4] MARPOL 협약에 따른 강제보고
4. [의제 5]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
5. [의제 6] 항만국통제(PSC)의 조화로운 시행
6. [의제 8] 2004 선박 평형수(BWM) 관리협약에 따른 PSC 지침의 개발
7. [의제 10] HSSC에 따른 검사지침 및 IMO 강제 협약 이행코드 부속서 검토
8. [의제 11] IACS 통일해석에 대한 검토
9. [의제 13] 비규제/미보고 불법어업 및 관련 사항
10. [의제 15] 작업계획 및 차기의제
11. [의제 17] 기타사항

## III.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2	다른 IMO 회의의 결정사항
------	-----------------

의제 주요내용

- 제9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0) 및 제108차 이사회(C 108)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 MSC 90은 SOLAS 2-2규정 일부에 포함 되어 명시된 적용일자 잠재적 충돌과 관련 언급된 것을 지적
  - 일반화물선 안전검토는 MSC 90에서 의제로 동의, '13년 결과도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
  - MSC 90에서는 MSC 90/W.7에 문서화된 부속서 4의 위험관리 선택 목록과 관련 전문 위원회에서 고려할 것을 지시함
- 제91차 해사안전위원회(MSC)의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 협약 비적용선박의 안전기준과 회원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특별한 협약 비적용 여객선 공통규정을 초기에 제한되어 지는 예상결과를 명확한 식별하여 비강제 기구의 개발을 위한 상세전략을 개발해야 함
  - IMO기구 내 보고 요건으로 설정한 필수 보고와 관련, GISIS 정보를 통해 총회 결의 안을 알림
  - 선박에서 보관하는 증서와 서류들로 증서와 서류에 전자적 접근을 위한 FAL위원회의 작업을 고려하여 선박에 보관해야 하는 “원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한 전문 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함
  - SOLAS 및 관련 코드의 개정 적용의 추가 작업반 설립하기로 합의
- 제63, 6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63, 64)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 항만수용시설을 위한 지역배치에 제공되는

MARPOL 부속서 I, II, IV, V, VI의 개정을 채택. 개정안은 '13. 8. 1이내에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

- MARPOL 부속서(7.19항)상 무인바지선의 검사 및 증서 요건을 면제하는 것을 정의한 검토
- ISO 사무국과 의사소통으로 인정기관(RO) 코드의 그 표준을 참고하기 위한 설명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승인
- 홍콩협약상의 선박검사 및 증서의 지침 안, 검사 및 증서 그리고 항만국 통제 관점에서의 홍콩협약상의 선박검사 지침 안 고려
- LEG 99, STW 43, NAV 58, DSC 17, C109, FP 56의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 기국 협약준수 방안 및 정부의 책임 - IMO 규정 이행상의 문제점 종합 분석
  -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 항만국 통제 (PSC)의 조화로운 시행 등

#### □ 논의 내용 및 결과

- 전문위원회 작업과 관련한 MSC 90차 및 Council 108차 회의결과에 주목함
- 전문위원회 작업과 관련한 MSC 91 회의 결과에 주목함
- 전문위원회 작업과 관련한 MEPC 63, 64 회의결과에 주목함
- 전문위원회 작업과 관련한 LEG 99, STW 43, NAV 58, DSC17, C109, FP 56 회의 결과에 주목함

#### 의제 3 기국의 협약준수 방안 및 정부의 책임

#### □ 의제 주요내용

- 2012. 10. 1일자로 UN DOALOS(UN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에서 발행한 1982 유엔해양법 협약(UNCLOS, 1982) 및 동 협약 XI장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대한 당사국 및 서명국 현황

- GISIS를 통한 정보의 통보 및 회람에 관한 총회 결의서 초안 및 GISIS 보고 모듈의 추가 개발 계획 초안을 제공
  - GISIS를 통한 정보의 통보 및 회람에 관한 총회 결의서 초안을 Annex 1로 제출
  - GISIS 보고 모듈의 추가개발 계획 초안을 Annex 2로 제출
- Paris MoU는 기국이 협약이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국가별 Black, Grey, White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리스트는 과거 3년간('09년~'11년) 30회 이상 PSC 점검을 수검한 기국에 대한 점검수 및 출항정지수를 기초로 작성
- 선박이 보유해야 하는 증서 및 서류 목록에 대하여 사무국은 관련 결정에 따라 동 목록 개정초안을 Annex로 제출
- 협약 비적용 선박의 GlobalReg 기준
  - "Safety regulations for passenger ships of less than 24 metres in length"의 경우 전문위원회별로 검토, 최소 2회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검토 작업은 통신 작업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 선박이 보유해야 하는 증서 및 서류 목록 (FAL.2/Circ.123-MEPC.1/Circ.769- MSC.1/Circ.1409) 부속서의 "Note"란에 따르면 선박이 보유하여야 하는 모든 증서는 원본(originals)이어야 함
- "원본(Original)"이란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부 PSC 검사관은 증서가 유효하고

관련 협약에 따라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서 발행주관청의 확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증서에 수기로 작성된 서명 및 직인이 있어야 원본(original)로 인정하고 있음

- IMO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 정부가 발행한 증서는 인정이 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된 서명 및 직인은 요구하고 있지 않음
- 각인된 서명 및 auto pen<sup>1)</sup>에 의한 서명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IMO 협약에 따라 발행된 증서는 서명이나 직인의 방식과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명이나 직인의 방식은 주관청의 책임하에 결정되어야 함

□ 논의 내용 및 결과

- UNCOLS 현황에 대한 정보에 주목함
- 결의서 초안을 수정 없이 동의하고 MEPC 65 및 MSC 92에 제출 결정
  - GISIS모듈에 대한 주요 추가 개선 필요사항 (→개선계획 미정)
- 전문위원회는 Paris MoU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주목함
- 선박이 보유해야 하는 증서 및 서류 목록에 대하여 사무국이 제출한 목록에 대하여 승인하고 Circular 개정안을 MEPC 65, MSC 92 및 FAL 38에 제출 예정
- 협약 비적용 선박의 GlobalReg 기준 관련 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고 MSC 92에 제출 예정
  - 1) 원칙적으로 제안된 방법에 동의
  - 2) FSI 22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사항 검토

- 24m이상 여객선에 대한 추가 규정 개발 및 최대 길이 결정

- 3) 제22차 FSI에서 작업기간에 대하여 검토
  - 4) 초기검토 종료시까지 내수운항선박, 어선, 12미터 이상 여객선과 관련된 검토 결정 연기
  - 5) 초기검토 종료시까지 GlobalReg 최신화 절차와 관련된 결정 연기
- 아국은 증서의 유효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직접 서명 또는 직인에 국한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발언하였으며,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증서에 승인된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된 서명 또는 직인이 있는 경우 원본으로 인정 가능
    - 2) 승인된 전자적인 방법은 FAL에서 결정할 사항임
    - 3) Circular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
      - (1) Circular 본문 5항 : 이 Circular는 PSC 점검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2) 부속서 Note
        -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증서는 원본 이어야 함” 문구 삭제
        -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증서는 유효하고 협약에서 요구하는 표준증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문구 추가

의제 4	MARPOL 협약에 따른 강제보고
------	--------------------

□ 의제 주요내용

- 2011년도 MARPOL 협약에 따른 강제보고 및 결함 보고서의 분석 및 평가

1) 팩시밀리에서 자동적으로 서명이 되는 장치

- '06년~'11년까지의 MARPOL 강제보고서 제출실적은 Annex 2에서 표로 알림
- 2011년에는 다음과 같이 기국들이 항만수용 시설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보고(총 14건)
- 항만수용시설과 관련된 MEPC 회람문서의 개정 및 최신화
- MEPC 63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람안의 개정안을 제출

**□ 논의 내용 및 결과**

- 회원국의 보고서 제출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각 회원국에게 제출기한 내에 보고 촉구
- 제출된 회람 개정안은 협약 개정사항을 단순 반영한 사항이므로 특이사항 없이 승인되었으며, MEPC/Circ.470(관련 MARPOL 개정안이 '13년 8월 1일 발효예정)을 제외하고 MEPC 65에 승인을 위해 제출 결정
- 항만수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동 문제점을 MSC 및 MEPC에 전달 결정

**의제 5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

**□ 의제 주요내용**

- 사고보고서 등에 대한 통신작업반의 검토 결과를 알리는 내용
  - 관찰사항, 교훈사항, 전문가평가
  - 조사코드 이행에 관한 2개의 결의서를 1개의 결의서로 통합·개정하여 해양사고조사코드 이행에 있어 조사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평가결과의 회람 및 보고체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위원회에 권고

- 사고보고규정(MSC-MEPC.3/CIRC.3) 개정에 대한 작업반의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오염 사고에 대한 정보의 유지 필요성을 알릴 것이 권고됨

**□ 논의 내용 및 결과**

- 조사보고서 분석에 따른 CG 발견사항에 대하여 FSI에서 승인하고 GISIS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
- 선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교훈사항(Lessons Learned)을 승인하고 IMO Website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
- “조사코드 이행에 있어 조사관 지원을 위한 지침”과 “해양사고 조사에 있어 인적과실 조사를 위한 지침” 개정안 확정하고 총회 제출전, 승인을 위하여 MEPC 65 및 MSC 92에 제출하기로 결정
- 조사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회원국들에게 공지할 것을 승인
- 보고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MEPC 65 및 MSC 92에 제출 결정

**의제 6    항만국 통제(PSC)의 조화로운 시행**

**□ 의제 주요내용**

- PSC 각 지역 협의체에 관한 진행보고서 제공
  - 2011년 4월 홍해 및 아덴만 지역에 새로 제안된 PSC 협의체에 대해 홍해 및 아덴만의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 기구(PERSGA, 홍해와 아덴만의 환경 보호를 위한 IMO 활동에서 감시 역할의 정부간 조직) 회원국인 Jordan, Sudan 그리고 Egypt가 서명하였고, 다른 회원국들은 현재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2013년 1월 Jeddah

- 에서 개최되는 PERSGA 워크숍 추가협의
- 최근 진행된 Equasis 정보 시스템에 관한 정보 제공
- Med MoU “Decision Support Tool”의 기타 PSC 협의체 제공 확대 및 지속적인 최신화가 필요
  - 제14차 Med MOU PSC 위원회에서 지중해 연안 PSC의 조화로운 시행을 위해서 IMO를 대신해서 지중해지역 해양오염 비상대응 센터(REMPEC)에 의해 시행된 SafeMed II Project의 일환으로 한국선급에 의해 개발된 협약전산화 시스템(Decision-Support Tool)이 공식적으로 인도됨
  - 협약이 빈번히 최신화 되는 것을 고려할 때 Tool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최신화가 필요함을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자금조달이 가장 큰 문제

□ 논의 내용 및 결과

- PSC 각 지역 협의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 특별한 논의사항 없으나 사무국은 지속적인 PSC 활동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
  - 홍해 및 아덴만 지역에 새로운 PSC 협의체 설립에 대해 홍해 및 아덴만의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 기구(PERSGA) 회원국인 Djibouti, Jordan, Sudan 그리고 Egypt가 서명하였고, 다른 회원국들은 현재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 '13. 07. 02~04 동안 제6차 PSC 협의체 사무국과 정보센터 이사들 간의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정확한 일정은 사무국에서 PSC 협의체에 회람하기로 함
- Equasis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 하기 위한 문서로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 회원국들은 MedMoU Decision-Support Tool이 PSCO에게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므로 다른 PSC협력체나 항만국에서 Tool을 도입하고 최신화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IMO에 요청함
  - 사무국은 차기회기 및 '13. 07. 02~04 동안 개최 예정인 제6차 PSC 협의체 사무국과 정보센터 이사들 간의 워크숍에서 기술적/재정적 측면으로 추가 논의하기로 함

의제 8	2004 선박 평형수(BWM) 관리협약에 따른 PSC 지침의 개발
------	--------------------------------------

□ 의제 주요내용

- 2004 선박 평형수(BWM) 관련 협약에 따른 향후 PSC 지침 개발을 위한 문서
  - 2004 선박 평형수(BWM) 관련 협약에 따른 PSC 지침개발 관련하여 시간의 제약으로 미루어져 왔으며 FSI 21차에서 논의

□ 논의 내용 및 결과

- 2004 선박 평형수(BMW) 관련 협약에 따른 PSC 지침개발에 대한 기술적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금번 회기에 본 의제를 위한 추가 작업반 구성이 어려움을 들어 FSI 21차 이후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추가 논의 후 FSI 22차에서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국도 참여할 계획
  - 통신작업반은 BLG 17차 및 MEPC 65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MEPC 65차 이후에 MEPC 65차에서 Sampling 및 분석에 대하여 검토 후 그 결과가 반영된 작업지시서

(TOR)에 따라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  
 - MEPC 65차에 목표 완료 기한을 2014년  
 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

**의제 10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의 검토**

**□ 의제 주요내용**

- “검사조화제도(HSSC)에 따른 검사지침” 및 “IMO 강제협약이행코드 부속서”의 검토와 관련하여, 제·개정된 협약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수행한 지침 및 코드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
- “검사조화제도(HSSC)에 따른 검사지침의 검토”와 관련하여, 제·개정된 협약을 시기적절하게 검사 지침에 반영하기 위하여 FSI 20차 이후에 채택된 협약 개정사항 및 비강제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새로 채택된 협약 개정사항 및 비강제요건에 대한 정보제공
-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Res.A.1054(27)) 부속서 개정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규정 목록을 제공
- SOLAS 12장에 언급된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가 검사조화제도(HSSC)에 따른 검사지침(Res.A.1053(27)) 및 ESP Code의 검사시기 요건과 맞지 않으므로 동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SOLAS 12장(산적화물선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 3규칙에 따르면 1999년 7월 1일 이전에 건조되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적화물선은 동 협약에 따른 기준일 이후에 처음 도래하는 중간검사 또는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시에 검사강화제도(ESP Code)를

참조하여 동 요건에 적합하도록 검사되어야 함

- SOLAS 12장 및 검사강화제도에 따른 검사는 선체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선체구조의 변경 및 수리는 입거 시에만 가능하므로 이는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와 관련이 있음
- 화물선안전구조와 관련된 검사에는 정기적 검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으며, SOLAS 1988 의정서 1장에 따르면 정기적 검사는 화물선안전설비 및 화물선안전무선 검사에만 해당됨
- 1978 SOLAS 의정서에서는 화물선의 선체구조검사가 5년을 넘지 않는 주기로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시에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88 SOLAS 의정서는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를 대체하기 위하여 정기검사(renewal survey)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음. 이에 SOLAS 12장 3규칙에서 언급하는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옵션을 제시함
  - (옵션 1) SOLAS 12장 본문의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를 “정기검사(Renewal Survey)”로 개정
  - (옵션 2) SOLAS 12장의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는 화물선안전구조검사에 따른 “정기검사(renewal survey)”와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한다는 MSC 회람안 발행
- 기관이 없는 비자항 무인바지선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
  - 국제항해에 종사하고 총톤수 400톤 이상의

기관이 없는 비자항 무인바지선이 MARPOL 협약에 대한 검사와 증서발행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요청이 있지만, MARPOL 상에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게 정기적인 검사와 증서발행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선박들이 있음

- 동 선종에 발급되는 증서에는 표기되는 항목이 거의 없으며, 정기적인 협약검사 시에도 검사할 항목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의 적용이라고 판단됨

□ 논의 내용 및 결과

- 통신작업반이 제출한 HSSC에 따른 검사지침 (Res.A.1053(27)) 및 IMO 강제협약이행코드 (Res.A.1054(27))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후 큰 이견 없이 승인
- 새로운 협약개정사항 및 비강제요건 목록에 대하여 검토하고 큰 이견 없이 승인함
- 제출한 협약개정사항 목록에 대하여 검토하고 큰 이견 없이 승인함
-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으나, 그 방법으로 SOLAS 협약을 개정하는 것(옵션 1)은 부적절하며, 옵션 2를 선택함
- SOLAS 12장 7규칙(산적화물선의 검사 및 정비)에 따른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는 정기검사(renewal survey)로 국한해서는 안되므로, SOLAS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는 “중간검사(intermediate survey)” 또는 “정기검사(renewal survey)”의 2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

- 동 결정을 바탕으로 인도가 제안한 MSC Circular 초안을 수정하여 승인. 아울러 ESP Code(강화검사제도) 부속서 A의 부속서 6에서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ESP Code는 DE 전문위원회 소관이므로 동 내용을 DE 57에 전달 결정

- MARPOL 협약 면제요건을 위한 unmanned (무인)과 non-self-propelled(비자항)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세부 논의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1) unmanned(무인) : 선원, 여객 및 기타의 자가 없으며, 거주 구역 및 관련 설비가 없어야 함
- 2) non-self-propelled(비자항) : 유성잔류물,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없어야 함
- 3) 기타 : MARPOL 부속서 1(기름) 및 2(유해 액체물질)의 적용을 받는 화물 및 산적위험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안됨
- 개별 부속서 별 면제 요건에 대한 검토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고 회기 중 논의 시간이 부족하므로 회기간 통신작업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통신작업반의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음
- 1) MARPOL 부속서 1, 4, 및 6의 검사 및 증서 발급 요건이 언제 면제 요건 검토
- 2) MEPC 64/7/6을 바탕으로 제안 및 권고 사항을 제22차 FSI에 보고

의제 11 IACS 통일해석에 대한 검토

□ 의제 주요내용

- SOLAS 및 MARPOL 협약 상의 인도일에

대한 통일해석 승인 요청

- 신조선에 대한 SOLAS 및 MARPOL 협약 적용일에는 계약일, 용골거치일 및 인도일 등 세 가지가 있음
- 이 중, '인도일(Date of Delivery)'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재, 최초검사(Initial Survey) 완료일 또는 조선소-선주 간 선박 인도 서명일이 실무상 혼재되어 '인도일'로 적용되어 왔음
- IACS 통일해석의 내용은 '인도일'을 협약 증서에 기재된 최초검사 완료일로 해석하는 것임
- 선박 인도 서명일이 최초검사 완료일보다 과도하게 늦어질 경우, 인도일의 선택에 혼란이 가중되며, 동 기간 내 발효된 SOLAS 및 MARPOL 상의 요건을 추가 적용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 있음

□ 논의 내용 및 결과

- 작업반 구성 후, '인도일'을 협약 증서 상의 최초검사 완료일로 해석한 IACS 문건(FSI 21/11)에 대하여 논의함
- 동 IACS 통일해석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기존 MSC-MEPC.5/Circ.4(건조계약일, 용골거치일 및 인도일에 따른 법규 적용 통일해석에 관한 회람)에 반영하여 수정안 기안

의제 13	비규제/미보고 불법(IUU) 어업 및 관련 사항
-------	----------------------------

□ 의제 주요내용

- IMO 선박식별 번호제도의 자발적인 적용에 따른 어선면제를 수정하여 제도상 어선포함을

위한 규정인 A.600(15) 결의서의 개정 제안을 고려하기 위해 비규제/미보고 불법어업의 차기 합동회의에 의제로 제안함

- 어선을 위한 IMO 번호제도 적용 설정
- 100톤 이상의 모든 어선 또는 크기, 기국의 독점적인 국가관할권의 한계를 넘은 운항 해역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
- 케이프타운 계약하에 모든 선박, 가능한한 거친 바다와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s)에서의 비규제/ 미보고 불법(IUU) 어업을 포함하는 모든 선박이 포함됨. 또한 이러한 규정은 IMO 선박번호제도의 운영 적인 방법에 따른 어선 선단의 선박척수가 포함됨
- 제3차 IMO/FAO 합동작업반 준비와 관련한 FAO의 의견을 제공
  - 어선, 냉장운송선, 공급선 및 지원소유선 (GR에 알려진)의 종합적인 기록의 지속적인 준비는 FAO 조정기구의 승인에 따른 우선 작업 항목임
  - 고유선박식별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 현 우선 순위는 기국, 선주 변경 또는 선박의 개조 (외관의 변경)와 관계없이 선박수명에 따름. 그러므로 선적증명서(선박등록에 대하여 국가입법이 요구가 있는)내의 고유식별번호 삽입은 강제적으로 해야 함을 고려
  - 냉장운송선과 양식업에 지원에 사용되고 어선으로 분류되지 않은 특정 선종은 이미 IMO 선박식별번호 계획에 해당된다고 언급할 수 있음
  - 100톤이상의 어선과 관련 IMO 사무국과 IHS -Fairplay의 자문, UVI에 대한 올바른 기준은 IMO번호제도 근본인 LR번호체계임. 이와 관련 FAO는 FSI 21/13 문서 5,6,7항의



추론에 따라 동의함

□ 논의 내용 및 결과

- 지난 회기(FSI 20/15) 논의된 IMO/FAO 합동작업반 준비와 관련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FSI 22차 회의의제로 함. 아울러 합동작업반의 결과를 FSI 23에서 고려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MSC 92차에서 완료목표를 2015년으로 하도록 권고
  - 관련 규정 결의서 A600(15)의 개정을 위해 MSC 92차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 장기 논쟁에 따라 어선을 위한 이 제도를 현재의 톤수의 기준으로 A 28차에서 총회 결의안으로 고려되도록 권고함

**의제 15 | 작업계획 및 차기회의 의제**

□ 논의 내용 및 결과

- FSI 22차 잠정의제와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함
- 통신작업반 설치
  -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
  - HSSC에 따른 검사지침 및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 부속서 검토
  - 2004 선박평형수(BWM) 관리협약에 따른 PSC 지침의 개발
- 작업반(WG/DG) 설치
  -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
  - HSSC에 따른 검사지침 및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 부속서 검토
  - 항만국통제(PSC)의 조화로운 활동
  - IMO 규정 이행상의 문제점 종합 분석
- FSI 22차는 2014. 3. 3~3. 7 IMO 본부에서 개최 예정임
- FSI 22차 잠정의제

No.	의 제
	개회사
1	의제의 채택
2	다른 IMO 회의의 결정사항
3	기국의 협약준수 방안 및 정부의 책임
4	MARPOL 73/78에 따른 강제보고
5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
6	항만국통제(PSC)의 조화로운 시행
7	선원 근무시간 및 2006 해사노동협약에 관한 PSC 지침
8	2004 선박 평형수(BWM) 관리협약에 따른 PSC 지침의 개발
9	IMO 규정 이행상의 문제점 종합 분석
10	HSSC에 따른 검사지침 및 IMO 강제협약 이행 코드의 부속서 검토
11	IACS 통일해석에 대한 검토
12	해상에서 구조된 사람의 안전보호 수단
13	비규제/미보고 불법 어업 및 관련 사항
14	일반화물선 안전 검토
15	작업계획 및 차기회의 의제
16	차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17	기타사항
18	위원회에 보고

**의제 17 | 기타사항**

□ 의제 주요내용

- SOLAS협약과 관련된 코드 및 지침의 개정안 적용범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
  - MSC 91차(12. 11. 26~30)에서 SOLAS 협약과 관련된 코드 및 지침에 대한 개정안의 적용범위 문제의 전반적인 고려를 위해 FSI 21에서 추가 작업반 설치를 승인
  - MSC 91은 작업반이 FSI 21의 5일간 회의를

통해 MSC 92에 직접 보고 하도록 동의

○ GISIS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 세계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sup>2)</sup>)는 해운 관련 자료의 수집, 처리, 배분을 위해 24개 모듈을 운영 중이며 현재 4개의 모듈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회원국과 사무국에 보고서 생성, 공공해운정보의 제공 등의 이행과 보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함
- GISIS의 공용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9만개 이상의 공공등록 IMO 웹계정이 있으며 8천 이상의 공인회원이 GISIS 회원영역에 접근할 수 있음
- 12개월 동안, GISIS 공용공간을 사용자에게 의해 월평균 약 9,600명이 방문하고 하루 평균 4천 페이지 열람하였고, 회원공간에서는 월 평균 약 1,600명이 사용자가 비 공공정보와 국가 관련 정보 유지를 위해 접속하였음
- 공공영역에서 최적의 접속 모듈은 전체 내용물의 약 45% 분량을 해양보안모듈이고 다음으로 9%는 항만 리셉션 시설 모듈이, 연락망, 해양사상 및 사고, 해적 및 무장 강도 모듈에서 각각 7%를 보유하고 있음

No.	모듈명	모듈 현황
1	Contact point for PSC/Casualties, Harmful Waste, Bulk Chemical	온라인
2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온라인
3	Maritime Security	온라인
4	Recognized Organizations	온라인
5	Port Reception Facilities	온라인
6	Condition Assessment Scheme	온라인
7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온라인

No.	모듈명	모듈 현황
8	Greenhouse Gas Emission	온라인
9	Status of Treaties	온라인
10	Ship Particulars	온라인
11	Simulators	온라인
12	LRIT Data Distribution Plan	온라인
13	Dangerous Goods Carriage Difficulties	온라인
14	Bulk Chemical	온라인
15	Piracy and Armed Robbery	온라인
16	Radiocommunications and SAR	온라인
17	Information on Local Regulation	온라인
18	IMDG Code Disparities Feedback Mechanism	온라인
19	MARPOL Annex VI	온라인
20	Port State Control	온라인 (실시간)
21	LRIT Information Distribution Facility	온라인
22	Evaluation of Hooks	온라인
23	Facilitation	온라인
24	Organizational Planning	시험이용 (사무국)
25	Country Maritime Profiles	개발중
26	London Convention and Protocol	개발중
27	Ballast Water Management	개발중
28	Safety-, security-, pollution prevention- related Requirements	개발중
-	FAO-IMO Global Record on Fishing Vessels	완료/비활성

2)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IMO 규정에 따른 주관청의 대 IMO 통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Web Site